

<p>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시행 2018. 6. 20] [총리령 제1468호, 2018. 6. 20, 일부개정]</p>	<p>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시행 2020. 3. 20] [총리령 제1601호, 2020. 3. 20, 일부개정]</p>
<p><b>제21조(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) ①</b> 법 제19조제1항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물질을 말한다.</p>	<p><b>제21조(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) ①</b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(생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
<p>2. 「<u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군 <u>감염병</u>, 제2군<u>감염병</u> 및 제3군<u>감염병</u>을 일으키는 <u>병원체</u></p>	<p>2. 「<u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급<u>감염병</u>, 제2급<u>감염병</u>, 제3급<u>감염병</u> 및 제4급<u>감염병</u>을 일으키는 <u>병원체</u>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25조(규제의 재검토)</b>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25조(규제의 재검토)</b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2. (생략)</p>	<p>1.2. (현행과 같음)</p>
<p>3. 제5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: <u>2014년 1월 1일</u></p>	<p><u>&lt;삭제&gt;</u></p>
<p>4. ~ 6. (생략)</p>	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